

—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에 편입된 양포동사무소에 대한 예정부지를 확보하고 동사무소를 신축·이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【양포동사무소 예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】

- 부지매입
 - 구미시 옥계동 4단지내 ⇒ 2,361㎡(714평), 344,000천원(조성원가)
- 건물신축
 - 연건평 990㎡(300평), 지하1층, 지상2층 ⇒ 1,600,000천원(추정가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제84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, 제46조~제48조

5. 검토의견

-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73회 임시회 시 심의한 바 있습니다.
- 기존 양포동사무소 부지가 제4단지에 편입됨으로 인해 조속한 공단 조성 및 동사무소 이전이 맞물린 문제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져야 추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현안입니다.

- 4단지 준공될 시 인근 주민들이 공단규모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시설 부지를 추가로 희망하는 사항은 있으나 상위법이나 기타 저촉 사항은 없음.